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6:30
- 장 소 : COEX 구관 3층 컨퍼런스센터 320호

주 최 : 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2000.7

CPh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14:00~16:30
- 장 소 : COEX 구관 3층 컨퍼런스센터 320호

주 최 : 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모시는 글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생활 방식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대는 우리에게 무한한 성장과 발전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침해,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 시급히 풀어야 할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지 않고는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반을 금년초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법률 개정 시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7월

정보통신부장관 안 병 엽

공청회 진행순서

- 14:00~14:20 개회사 및 개정배경 설명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교수
- 14:20~14:50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14:50~15:10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 15:10~15:20 휴 식
- 15:20~16:20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지정토론자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유황빈 (광운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
 이종필 (변호사)
 정준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영호 (한국정보범죄연구소장)
 (가나다순)
- 16:20~16:30 정리 및 폐회

차 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	1
◎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9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33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시안	59

개회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 설명

©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성낙인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이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로 법개정연구반에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5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 교육, 행정 등 국가 5대 기간전산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6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쇼핑을 하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는 순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각종 역기능의 출현으로 우리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의 침해와 음란물 유통 등 역기능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

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여 그동안 공들여 구축해 온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과거 정보화를 선도하였던 법률과 제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법률과 제도가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촉진이라는 정보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면, 새로운 정보화의 세기인 21C에는 정보화 진전에 따른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연구반을 중심으로 법률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오늘 공청회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법률의 개정 배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분야를 보면,

정보화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선진국들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법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민간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법적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평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법적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 정보화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법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신장시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간편·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 M&A, 영업양수 등의 경우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와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입니다.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국민들 특히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불건전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나 공개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글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공간상의 각종 불법행위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정보화가 빨리 진행된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불건전한 인터넷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상의 불건전정보 유통은 과거 산업사회시대의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에서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규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불건전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도 사이버사회에 걸맞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불온통신이라는 개념 대신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인터넷 콘텐츠

츠에 관한 등급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각종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상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다른 정보화의 역기능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도 그 사례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발생한 CNN, 야후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서비스 거부공격은 인터넷사이트가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사이버 아파트,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국민에게 그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 수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평가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성숙된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정보 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해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통신사업자들도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민간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화 추진정책과 정보화 역기능방지 시책을 균형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고 인터넷혁명이 가속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석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법률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 제안발표

◎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

1. 현행 법령의 미비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미비점

- 현행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관련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존재
-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제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대리점 및 백화점 등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 곤란
-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에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국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공평한 법집행에 한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합병,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으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제3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미성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지적수준이 낮아 동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곤란하므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우려

- 개인정보침해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관련 조항의 미비점

-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선언적 규정만을 두어
 - 정보통신망과 사이버아파트 등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외부의 해커 및 바이러스 침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확보가 어려움
- 시스템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미흡

2. 개정방향 및 법체제 정비방안

□ 개정방향

- 인터넷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 불건전정보유통방지를 위한 현행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안전성관련 규정 등을 보완

□ 법체제 정비방안

- 법률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가칭)”로 변경하고
 -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통합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정책 강화

□ 적용범위의 확대

-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대리점에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일반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준용(안 제10조 및 제71조)
- ※ 개인정보보호관련조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유통사업자, 건설회사,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자 등)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0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통신업체 대리점이 본사 고객의 가입신청 업무를 취급하고 개인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부여 필요
 - 최근 통신업체 대리점 직원에 의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용규정 미비로 적절한 처벌 곤란
 - ※ 대리상(대리점)이라 함은 독립상인으로서 일정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상법 제87조)
-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소재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

제71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6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유통사업자, 여행사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적용범위 확대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 처리, 저장, 유통하는 경우에만 한정
 - ※ 영국의 199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관리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 개인정보 수집범위의 제한

- 현행 필요최소한의 정보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대신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수집하도록 하고,
 -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7조제4항 및 제79조제2호)
 - ※ 필수항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한정)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7조(수집의 제한)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필수항목으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범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제16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규제내용이 불명확하고, 수집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실효성이 결여
-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하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미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 독일의 1994년 연방데이터보호법(BGBl. IS. 2325)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1999년 개인정보보호시행령(안)에서는 “서비스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여부는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명시”하도록 규정

□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 강화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의 수집을 제한(안 제7조제1항)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7조(수집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래 국가등 공공기관만이 사상·신조등 기본적 인권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였으나,
 - 최근 민간부문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
 - 관련 입법례
 - 프랑스의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 제31조
 - ※ 사람의 혈통, 정치적·철학적 또는 정치적 견해, 조합의 소속 또는 품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기명 데이터를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 영국의 「1998년데이터보호법」 부칙
 - ※ 민감한 개인데이터(데이터 주체의 민족, 인종적 출신사항, 정치적 견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 성생활 등)는 데이터 주체가 명백히 동의하든지, 기타 법률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 이용자 권리의 확대

-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의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1조(영업의 양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단서,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자등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기업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 회원가입 탈퇴 등의 선택권 부여 및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필요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회사등에게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

□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안 제17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7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意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최근 초등학교등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만14세미만의 아동들이 고지 또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 필요
 - 각국의 입법례
 - ※ 미국은 1998년 13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개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과 16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상업적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공정한 취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아동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
 - ※ 일본은 1998년 3월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명시

□ 이용자 권리구제제도의 확충

-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더욱 간편·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자료조사권·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 건의권을 신설(안 제19조 내지 제25조, 제68조제4항)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정보보호원(현재의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칭을 개칭)에서 그 사무국기능을 수행하도록

록 하고,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권은 현행처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사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9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

-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임무를 수행하며,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 수행
- 분쟁당사자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조정노력에 의하여 개인정보 관련 분쟁 해결
- 각국의 감독기구 현황
 - 영국의 데이터보호원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개인정보처리 신고(등록)제 시행 등

· 독일의 정보보호감독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등의 임무

·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지도 및 조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및 고충 접수·처리,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 민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신고제 시행 등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피해의 구제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쟁조정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구제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

- 이용자의 권리구제업무의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법정기구화

※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력, 기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원에 관련 업무 지원·수행하도록 함

제22조(피해구제의 청구) ①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피해의 구제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④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개인정보 피해자의 구체적 권리구제 절차

- 1차적으로 합의권고를 하며, 미합의시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상정 또는 관계당사자에 의한 신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제23조(분쟁조정)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상정되거나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분쟁조정 내용은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o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도록 하여, 소송의 방법에 의한 번잡과 다액의 비용을 피할 수 있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민법상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등(민법 제733조 단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

제24조(자료 요청) 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된 자료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시정조치 명령등 요청)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권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피해구제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 부여

- 피해사실확인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 관련 장부 및 컴퓨터 이력기록(로그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 현장조사방법 이외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관련 입법례

· 소비자보호법

※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과정 또는 기타 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모니터링에서 인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정보통신부장관에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건의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확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안 제12조, 제13조 및 제74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12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 처리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서비스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형량을 높이도록 함

※ 전문적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제공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개인정보의 부정거래 등의 금지

-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

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과징금 부과(안 제67조)

※ 과징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67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o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해당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환수
 -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매매행위를 근절
 - ※ 과징금제도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한 제도로 일종의 부당이득금박탈적 성격을 지님.

□ 개인정보의 국제간 이전환경에 따른 국제협력

- o 인터넷 환경으로 개인정보가 외국에 유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 외국기업의 영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및 대책 마련(안 제61조 내지 제63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이하 생략)
 제62조(협정의 체결) ①정부는 제61조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o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외국기업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 유럽연합(EU)은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개인정보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 95/46/EC)을 마련하고, 각국은 자국의 입법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

나.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지침의 제정

- o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정보통

신부장관이 제정·고시(안 제45조)

- 위 기준 미달시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66조 및 제80조제21호)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 안전성관련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사이버아파트 건설업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원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정보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정보통신망

의 안전에 관한 지침의 제정 필요

- 최근 사이버아파트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IDC 등의 각종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의 미비로 정보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 피해 우려

o 안전지침의 기능

- 사업자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의 제시
- 정보의 가용성(availability), 비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도모
- 각국의 입법례
 - OECD는 1992년 정보시스템보안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을 발표
 - 일본 우정성은 「정보통신네트워크안전·신뢰성기준」(1997. 7. 18 개정, 우정성고시 제364호) 제정·시행

□ 정보보호업무종사자의 책임강화

- o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내의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46조 내지 제48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①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보호책임자의 책무)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시스템관리자의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오류 및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
2. 응급조치 절차
3. 복구대책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스템관리자의 책무)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중요한 로그기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관리에 필요한 부정행위 확인등 정보보호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요구
 - 정보보호전문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의 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인 체계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49조)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49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 이용자보호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필요
 - 정부가 정보보호 적합성 인증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보통신망의 보호강화

-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전달·유포시키는 행위를 형사처벌(안 제 50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
 -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3항 및 제 79조제15호)

【관련 규정 및 제안이유】

제50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 컴퓨터바이러스의 전달, 유포행위
- ※ 현행 형법에서는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66조)
-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에 의한 서비스제공자 또는 타인의 전자우편 시스템 등에 장애유발 등 행위

○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의 사용불능은 생산성 저하와 기밀 노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 1999년 4월에 발생한 CIH바이러스는 국내의 컴퓨터 24만여대에 감염되어 약 1천억원 정도의 피해액 발생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1.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

□ 현행법규정의 문제점

-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상의 내용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정으로 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8조의2(전기통신이용음란죄)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2가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 관의 취급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헌여부와 관련한 문제 점이 있다.

첫째, 현행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 법리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둘째,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발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 ID가 정지되거나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 주체는 정보제공자이다. 그런데, 정보제공자의

의견청취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명령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¹⁾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법논리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법규정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뿐, IP나 ISP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고, 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건의'만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령권이 시정요구권의 법적 기반이라 보기 어렵다.

□ 불법정보 개념의 도입

- 위헌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온통신'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대체한다. '불법정보'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하고,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던 '불온통신'개념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불법정보'와 유통이 제한되는 대상으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명령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인 동법 제71조 제7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로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 7. "청소년유해정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민간감시망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고지하도록 한다.

제27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①누구든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및 매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2조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의 유통에 직접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

츠 유통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 유통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범구조를 변경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의 객관적인 표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윤리위의 고지를 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기책임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불법정보로 사법기관이 판정하면, 이에 대한 공동불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기책임에 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고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36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불법정보처리담당자의 지정)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리목적으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영리목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자(이하 "불법정보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법정보취급거부명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명령권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로 축소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존치하도록 한다. 명령권의 대상을 불온통신(불법 및 유해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불법정보로 제한하고, 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29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과태료) 제29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도입

□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도입필요성

-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PC통신·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정보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활용하여 자녀와 학생의 정보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고 성인층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적 장치의 부재로 유통이 가능한 청소년유해정보가 사실상 유통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와, 인터넷콘텐츠산업 육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

내용등급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정보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과 허위표시의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선별(filtering) 소프트웨어의 설치의 무화 대상이다.²⁾

□ 등급표시의무대상

- 등급표시대상에 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한 등급기준과 등급표시방식에 의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면(불법정보에 대한 고지권만을 규정),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제공자를 등급표시의 무자로 설정해 주어야만, 등급조정 절차를 통해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제공자에게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례는 호주의 1999년 개정방송법(온라인 서비스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 등급표 상의 RC나 X 등급의 콘텐츠는 유통이 금지되고, R등급의 콘텐츠는 방송청에 연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전자서명 또는 신용카드인증)를 제출한 성인이 성인ID를 부여받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유해정보(R등급의 정보)는 방송청이 인정하는 접속제한시스템(RAS)를 통해서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대상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나 이의 보급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에서 규정하고 있다.

○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급미표시정보에 대해서 등급표시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는 반드시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등급조정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이용자, 감시망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된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조정절차의 규정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에게 등급조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자가 윤리위의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조정결과가 강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지한 경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등급으로 조정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조정의 경우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등급조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등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이의신청)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등급조정을 받은 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대상

○ 등급제기반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문화센터, 인터넷 플라자 등)에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